

- 연구과제명: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
- 연구책임자: 이수형 연구위원(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)
- 연구기간: 2024.11.19.~2025.09.17.
- 연구목적: 보건의료 인력 수급, 분포, 활동,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건인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음
- 연구추진방향: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 7조(실태조사)에 의거한 3년 단위 법정조사
 - 2021년 제1차 실태조사부터 국가승인통계지정(승인통계 제117110호)
- 실태조사 내용
 -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7조제1항 중 제5호 내용
(제 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은 행정연계자료(면허정보 및 건보공단 자료)를 연계하여 작성)

제7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

1.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현황
2.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
3.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,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
4.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현황
5. **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, 근무여건 및 처우, 이직·퇴직,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**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

- 실태조사 대상
 -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20개 직종

3. "보건의료인력"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·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- 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(①의사·②치과의사·③한의사·④조산사·⑤간호사) 및 ⑥간호조무사
- 나. 「약사법」에 따른 ⑦약사·⑧한약사
- 다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기사(⑨임상병리사·⑩방사선사·⑪물리치료사·⑫작업치료사·⑬치과기공사·⑭치과위생사), ⑮보건의료정보관리사·⑯안경사
- 라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⑰응급구조사
- 마.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⑱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·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제2조(보건의료인력)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마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㉘영양사
2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㉙위생사
3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㉚보건교육사

○ 실태조사 일정

- 5월 26일~ 6월 9일: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
 - * 조사 응답율 등 검토 후 필요시 조사 기간 연장 가능
- 6월 중순~8월: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